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465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3. 13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-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를 흡수하고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토목+건축 8급 1명 : 사업소(당항포관리사무소) → 본청
- 기능직 10등급 1명 : 읍면(고성읍) → 본청

3. 본 문

- 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정원의 총수를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.

1. 본 청 : 241명
2. 의회사무기구 : 13명
3. 직속기관 : 140명
4. 사업소 : 14명
5. 읍 면 : 285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정원의총수) (생략)	제2조 (정원의총수) (현행과 같음)
1. 본 청 : <u>239명</u>	1. 본 청 : <u>241명</u>
2. 의회사무기구 : 13명	2. (현행2호와 같음)
3. 직속기관 : 140명	3. (현행3호와 같음)
4. 사업소 : <u>15명</u>	4. 사업소 : <u>14명</u>
5. 읍 면 : <u>286명</u>	5. 읍 면 : <u>285명</u>